

영등포구의회  
제20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0. 2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74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 
기관 설립·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과  
운영의 위탁 근거 신설
-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·운영 규정  
(안 제8조의2제1항)
-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운영 근거 마련(안 제8조의2제2항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0조(교육)
- 「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」  
제3조(위탁교육기관의 지정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·운영과 그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
  - 안 제8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8조의2제2항을 신설, 안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- 2017년 3월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운영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총 38개 기관이 있으며 전통적·획일적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  
- 현재 우리구에서는 “꿈더하기 학교”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받아 일반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하여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
  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, 전문화된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 련 법 령

## ■ 『장애인복지법』

**제20조(교육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·능력·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■ 『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』

**제3조(위탁교육기관의 지정)**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